

사업장 보건관리

순천향의과대학 우극현

I. 서론

산업보건의 목표는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건강장애를 받지 않으며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950년 WHO와 ILO의 합동위원회에서는 산업보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전하며
- ②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하여 유해요인에 기인한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 ③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건강유지를 도모하며
- ④ 정신적, 육체적 적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케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동력을 보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산업의의 활동은 임상적 활동과 기본적으로 다른 면이 많다. 임상적 활동 목표는 개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지만 산업의의 활동은 근로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관리 3대요소라 할 수 있는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가 관련 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대치, 격리, 환기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모든 형태의 위험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원리 중 어느 한가지를 적용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적절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또 시설, 운영비, 유지비, 근로자의 수용태세, 쾌적 정도, 편리정도 등을 고려한 대책을 세우려면 많은 연구와 경험 그리고 유해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위험이나, 비용, 효과 등은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유해대책은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유효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대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사용중의 대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2) 작업관리

작업상의 시간연구와 작업자의 동작 및 자세연구를 통한 작업분석, 피로 자각증상, 조사 및 생리적 생화학적 검사를 통한 작업자의 피로조사 등을 실시한 후 종합 분석하여, 인간

공학적 방법을 도입, 건강장해가 되는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유해물질의 폭로방지를 위한 작업개선과 위생보호구 착용 교육 및 지속적인 착용을 지도 감독하며, 표준작업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3) 건강관리

직업성 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 문제를 치료의학의 경우처럼 단순히 환자관리라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건강인을 포함하는 집단전원의 건강상태를 파악·관리 한다는 적극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말하자면 예방의학, 치료의학, 재활의학 등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포괄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와 제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관리의 내용은 건강자 관리와 환자 관리의 양자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실무상 환자의 발견과 관리에 얽매어 건강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은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건강자 관리와 환자관리를 병행하여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가 이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리대상 집단도 건강자와 환자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강자, 요주의자, 환자로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것이며, 모든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의 혜택을 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다수 건강자의 관심을 건강관리 내지 보건관리사업에 돌릴 수 있다.

< 표 1 > 산업보건관리의 3대요소

	관리대상	관 리 내 용	관리목적	지 표		판단기준
작업환경관리	유해물사용량 ↓ 발생량 ↓ 기증농도 ↓ 폭로농도	대체 사용형태, 조건 생산공정의 변경 설비,장치의 부하 원격조작 자동화 밀폐 국소배기 전체환기 건물의 구조	발생억제 격 리 제 거	환경기능농도		관리농도
작업관리	체내흡입량 ↓ 반응의 정도 ↓ 건강영향	작업장소 작업방법 작업자세 폭로시간 호흡보호구 교육	침입억제	생물학적 지 표	폭로농도	폭로한계
건강관리		생활지도 휴양 치료 배치전환	장해예방	건강진단 결 과		진단기준

II. 본 론

1. 산업보건사업의 정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보건사업을 말한다.

- 사업주 --> 안전 및 재해의 치료 및 보상의 일차적 책임자
- 보건관리자 -->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보건사업을 추진, 지도 감독 및 조언

2. 산업보건사업의 내용

- ILO의 산업보건서비스 권고안 112호(1959) 및 171호(1985)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 1) 건강진단 - 채용시, 정기(일반, 특수), 기타(작업복귀, 만성질환관리, 장애근로자, 연소자 및 여성)
- 2) 작업환경감시 - 산업위생(근로자 건강에 대한 유해요인 관리를 통하여 직업병 예방), 산업 안전(사고예방 및 개인보호구 감시), 위생학, 생리학 및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작업분석 및 근로자에 대한 작업적응, 일반위생 등.
- 3) 작업환경과 인간공학,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사고 및 직업병 예방, 근로자 복귀, 직업 재활 및 훈련 등에 대한 경영자 및 근로자 대표에 대한 조언
- 4) 보건교육과 훈련 - 보건과 위생교육, 응급처치 훈련
- 5)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통계자료의 정리와 정기적인 분석 - 기록유지, 보고서 준비, 사고와 질병에 의한 결근의 기록과 분석, 직업성 질환의 보고.
- 6) 의학적 치료 - 응급처치 및 응급치료, 결근하지 않았거나 결근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외래 치료, 재활, 일반진료 및 가족진료.
- 7) 건강상담.
- 8) 영양.
- 9) 가족계획 - 교육, 상담,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10) 산업보건연구.
- 11) 사업장내의 다른 서비스,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부서, 고용조건, 직업훈련, 사고예방 복지, 산업위생공학 및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와의 협력.
- 12) 외부 서비스와의 협동.

3. ILO의 3가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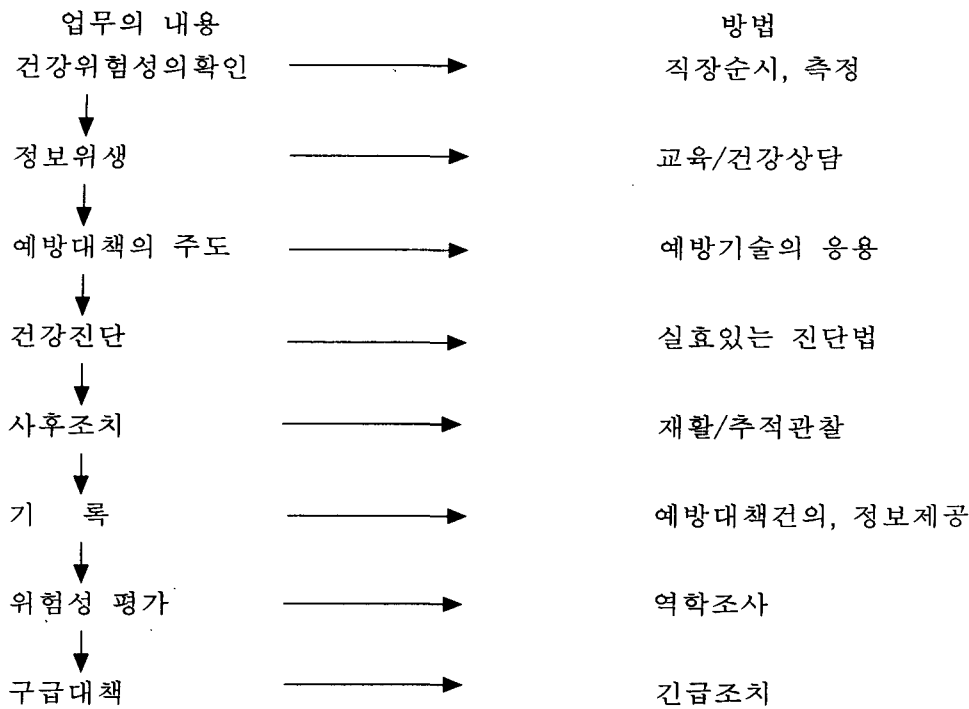
- 1) 산업보건사업은 예방을 중심으로
- 2) 직장에서의 자주적인 팀활동으로
- 3) 지역중심 또는 직종중심의 특징있는 보건계획 추진

4. 구미 각국의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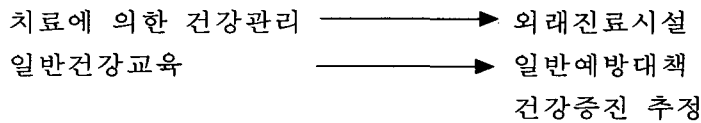
- 1) 법규준거형(rule-based)에서 자주대응형(enabling approach)로의 전환
- 2) 다양성 있는 산업보건업무 계획 수립
- 3) 산업보건사업의 평가 (필요성, 범위와 조직, 자원, 업무내용 등)

5. 산업보건업무 분류

(By Prof.Rantanen)



수의적 업무



6. Coverage of employees and self-employed by various OHS service provision models in Finland

Service provider	Employees		Self-employed		Total	
	n	%	n	%	n	%
Municipal health centre	660,863	41.4	49,442	96.0	710,305	43.1
Enterprise' own integrated OHS	463,980	29.1	30	0.05	464,010	28.2
Group service	84,581	5.3	276	0.54	84,857	5.2
State regional OHS unit	125,747	7.9	0	-	125,747	7.6
Private health centre	260,424	16.3	1,748	3.4	262,172	15.9
Total	1,595,595	100.0	51,496	100.0	1,647,091	100.0

7. 일본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위생활동

1) 안전위생추진자제도

: 상시 1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일정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사업주의 지휘하에 안전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중소기업집단에 대한 안전위생활동

: 친기업을 중심으로하는 구내, 구외의 사업장 집단, 공단, 사업협동조합 (지역별 또는 업종별)별로 자주적 안전위생활동 수행

3) 중소기업 안전위생활동 촉진사업 조성제도

- 대상 : 중소기업자 집단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을 것.
- 2) 유해 위험업무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을 것.
- 3) 최고경영자에 의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할 것.
- 4) 사업의 기획 입안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할 것.
- 5) 집단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갖고 있을 것.

* 중소기업자 :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의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 보조대상사업

- 1) 운영위원회 활동(년간 산업보건사업 계획 수립 등의 활동)
- 2) 산업보건교육
 - 집단내 안전보건교육(최고경영자 안전보건세미나, 중간관리자교육, 특별교육 등)
 - 집단내 강습회(직장환경개선 강습회, 건강교육 강습회)
 - 안전보건개선 연구회
 - 전국노동안전위생대회 참가
- 3) 안전보건진단
- 4) 건강진단 : 법정 특수건강진단(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진폐 등)
- 5) 작업환경측정
- 6) 특정자체검사(프레스, 포크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
- 7) 건강진단 사후조치와 관련된 지도 및 상담

- 보조요건

- 1) 지정집단으로서 위 보조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정하게 실시할 것(운영 위원회 활동,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사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2)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 명부 등재된 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이어야 함

- 보조액

- 1) 운영위원회 활동,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건강진단 사후조치 및 건강상담 사업: 경비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신청하는 금액
- 2) 건강진단 소요비용: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1인당 일정액
- 3) 작업환경측정 소요비용: 소요비용 2분의1한도내 신청하는 금액(사업장당 한도액 있음)
- 4) 특수자체검사 소요경비 : “
- 5) 한 집단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 한도액은 400만엔

- 보조대상 지정권자 : 자치단체의 노동기준국장
- 보조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4) 노동안전위생용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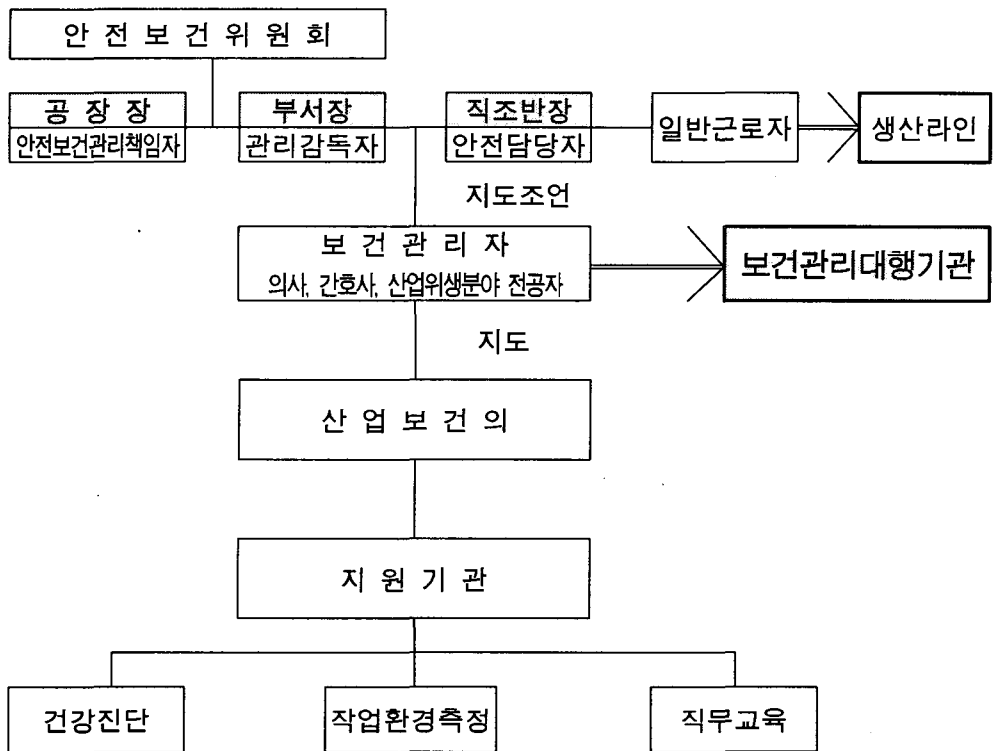
5) Senior Safety Leader 제도(정년퇴직자 등을 활용한 안전위생활동촉진제도)

6) 능력향상교육실시 촉진사업 : 중소기업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

7) 노동재해방지 특별안전진단사업 : 재해다발업종의 중소기업규모사업장에 대해 노동안전 컨설턴트 등에 의한 무료 안전진단 실시

8. 한국에서의 산업보건관리제도

1)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2) 보건관리대행제도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업종별 대행기관과 지역별 대행기관으로 구분하며 보건관리업무라 함은 분야별로 (표 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정 의 :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전문적인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목 적 : 효율적인 근로자 보건관리업무수행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
3. 법적근거 : 노동부 예규 제 180호(1990. 12. 시행)
4. 종 류 : 1)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노동부 장관 지정
2)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지방 노동관 서장 지정
5. 주요업무 :
 - 1) 보건관리분야 - 보건위원회 운영, 보건일지 건강기록작성 관리교육, 구급함관리, 일반위생시설관리,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 2) 건강관리분야 - 건강진단결과확인, 직업병 및 일반질환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일차 진료 및 응급처치 건강상담.
 - 3)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분야 - 작업환경순시, 건강에 유해한 인자를 조사, 환경개선과 유해물 관리지도, 위생보호구 점검, 지도

Table 2. Number of Factories employing 5 or more workers and total number of workers by scale (1994. 4. 30)

Scale	Total	5 - 49	50 - 299	300 or above
No. of Factories (%)	167,403 (100.0)	145,869 (87.1)	19,448 (11.6)	2,086 (1.2)
No. of Workers (%)	6,085,354 (100.0)	2,300,096 (37.8)	1,999,479 (32.9)	1,785,779 (29.3)

Table 3. Number of the Vicarious Health Management Agencies by year

년도	보건관리대행기관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90. 12	14	770	-
'91. 12	32	4,133	530,798
'92. 12	39	5,800	615,552
'93. 12	47	5,563	580,992
'94. 12	51	6,201	593,913
'95. 12	54	6,605	563,967

Table 4. Total number of factories and their workers engaged in the Vicarious Health Management System by scale. 1994. 4. 30.

	- 49	50 - 99	100 - 199	200 - 299	300 -	Total
No. of Factories (%)	598 (10.9)	3,457 (61.9)	1,248 (22.30)	243 (4.3)	43 (0.8)	5,589 (100.0)
No. of Workers (%)	23,773 (4.4)	242,890 (45.4)	167,223 (31.2)	59,138 (11.1)	42,149 (7.9)	535,073 (100.0)

Table 5. Manpower standard of the Vicarious Health Manage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lated regulation.

Basic Manpower per 100 factories or 10,000 workers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1 Occupational Health Nurse 2 Industrial Hygienist 2
Additional Manpower	1 O.H.Physician / 100 factories or 10,000 Workers 1 O.H.Nurse or Hygienist / 25 factories or 2,500 workers

Table 6. Factory visiting schedule according to the related regulation by the scale

Scale	Manpower	Visiting schedule
Factories employing 100 or more workers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Occupational Health Nurse Industrial Hygienist	1 time / 3 months 1 time / 1 month 1 time / 2 months
Factories employing under 100 workers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Occupational Health Nurse Industrial Hygienist	1 time / 6 months 1 time / 1 month 1 time / 3 months

*** The Details of Vicarious Health Management Services.**

1. Workplace rounding and instruction
2. Assessment and guidance on th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3. Supervision for the result of thr Periodic Health Examination
4. Etiological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and suggestion of their alternatives.
5. Health counselling
6.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or persons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7. Control of sanitary facilities
8. Selection and inspection of the protective devices.
9. Checking up the wearing condition of protective devices and instruction.
10. Participation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11. Inspection on working methods from the viewpoint of thr Ergonomics.
12. Recording and maintenance on the occupational health information

PROBLEMS IN VICARIOUS HEALTH MANAGEMENT SYSTEM IN KOREA

1. CONTINUITY
2. COMPREHENSIVENESS
3. STANDARDIZATION IN HEALTH MANAGEMENT SERVICES AND MANPOWER
3. TEAMWORK
4.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EMPLOYERS AND EMPLOYEES

9. 사업장 자율보건관리

1) 법적규제의 완화

노동부는 1997년 3월 17일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조법의 목적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면제

-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는 종전의 의무사항을 면제하였다.

② 보건관리자 겸직허용 확대

- 대기환경관리사가 및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동채용허용

- 동일 산업단지내에서 3개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주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전체 합계는 300인 이내여야 한다. 단, 공동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직무는 겸임할 수 없으며 사업장별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탁 전면확대

- 보건관리자 외부위탁 관련사업장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대행이 가능해졌다.

⑤ 보건관리자 최고 의무고용인원 하향조정

- 보건관리자를 사업의 종류와 규모별로 최고 3인에서 최고 2인으로 축소했다.

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면제대상 확대

- 현재는 일부업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선임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특조법에 의해 업종구분 없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선임토록 변경했다.

2) 자율적 보호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산업보건사업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dinger와 Levine, 1996).

VPP의 기본 개요는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프로그램을 제 3자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산업보건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증되면 OSHA의 정기감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1997년 5월 현재 전체 자율 산업보건사업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은 348개이다(VPPPA, 1997).

미국에서 VPP의 인증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최근 3년간 평균재해률이 동일업종의 평균재해율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과 함께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사업주 면접 결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통계 결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여기에서 산업보건사업의 결과보다는 산업보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VPP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는 정해진 양식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면 OSHA와 제 3자 인증기관은 이것을 검토하여 1차로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 및 근로자 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Star, Merit, Demonstration 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최종적인 승인을 한 후 그 결과를 OSHA에 통보하면 OSHA에서는 산업보건감사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승인한 후 과정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한 번 승인을 받은 후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보건관리자의 산업보건관리 직무활성화 방안

- 사업장 보건관리 평가도구 및 보건관리 지침서 개발 -

By 인하의대 예방의학교실 홍 윤 철 의

1. 사업장 보건관리 인력 선임기준의 검토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직무내용 개선방향
 - 직종별 직무항목의 중요도가 구분
 - 직무항목의 적정화
 - 직무수행과정 제시
 - 직종별로 직무의 가중치를 주어 업무수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 및 평가후 다시 환류
3. 보건관리자의 부서조직 정비
4.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권한 부여
5.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검토

11. 한국의 산업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대안 1. 300인 이상의 대기업 : 노사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

대안 2.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보건복지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대안 3. 50인 이하 영세기업 : 정부와 관련전문기관의 협조하에 근로자들의 보건복지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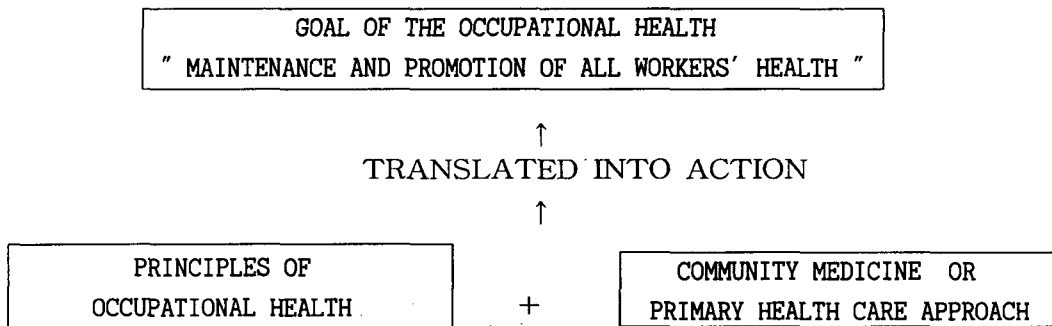
12. 구미공단내 중소기업 집단산업보건관리사업연구개발

1978년 9월 순천향 구미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건강관리과를 개설하여,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1988년 4월부터 구미지방 노동사무소로 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집단보건관리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3월 기존의 순천향 구미병원 건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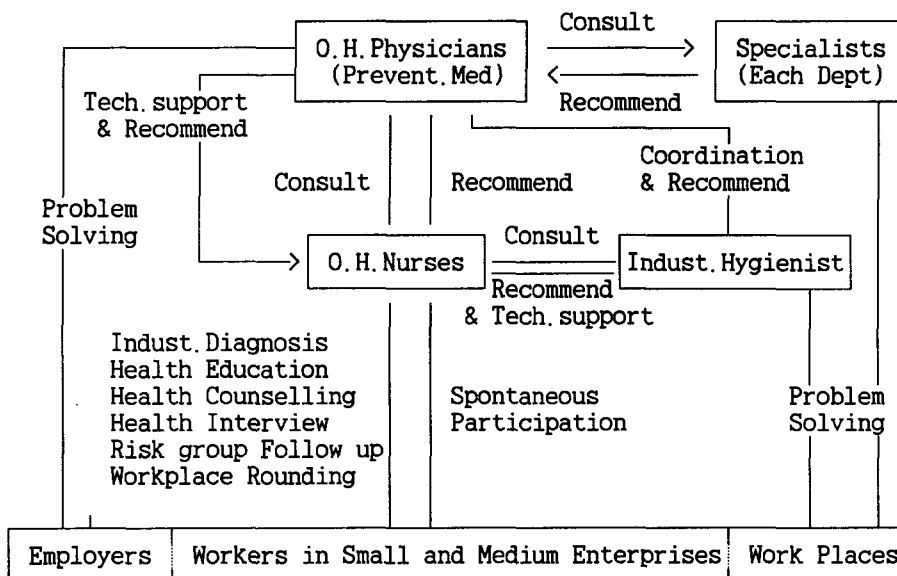
리과 내에 집단산업보건관리연구소를 개설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구미공단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내 김천, 금릉, 선산지역 근로자 300인 이하의 보건 관리에 소외된 사업장에 대하여 훈련된 산업보건 간호사를 파견, 산업보건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 일반질환과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게 하며 재활문제를 도와줌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집단산업보건관리 시스템의 기본개념은 Fig.1 과 같이 산업보건의 원리를 지역사회의학 또는 일차보건의료 접근법과 여하히 잘 접목시켜서 실천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1) Basic concept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Surveillance System



2) A scheme of our THP practice program.



* Our THP practice program is based on the Law,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3 and Regulations No.180 established by Ministry of Labour in Dec. 1990.

3) CHARACTERISTICS OF OUR GROUP OCCUPATIONAL HEALTH SURVEILLANCE SYSTEM

1. GOOD GEOGRAPHICAL ACCESSIBILITY
2. PROVISION OF COMPREHENSIVE HEALTH CARE
3. MANPOWER AND TEAMWORK
4. APPLICATION OF "WORKING UNIT" CONCEPT

13. 구미지역사회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

1. 목 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원리와 지역사회의학 또는 일차보건의료 접근법을 접목시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조직화함으로써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 증진시킨다

2. 배경 및 현황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시책에 힘입어 신흥 공업국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부산물로 산업재해 다발과 대형화를 수반하게 되었고, 또한 유해 작업환경으로 인한 각종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7년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4.4%나 되며 1992년 4월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588만 3천명 가운데 67.7%가 300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사업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작업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유병율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988년 2월에 처음으로 보건관리 대행제도를 만들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단건강관리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1년 6월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고, 1993년 제조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한 30인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1,500개를 선정, 국고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5년도 부터는 주무부서를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매년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5,000개를 대상으로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도부터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 1999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최근 IMF시대를 맞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업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구미시의 경우 299개가 넘는 50인 이하 사업장은 보건관리대행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보건담당자들도 거의 형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건업무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 사업의 당위성

대기업의 경우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포함하여 종합건강진단을 2년 또는 매년 받게 하고 있고 사내에 부속의원이나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50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고령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수준도 낮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

고, 특히 법적규제 완화조치로 유해인자가 많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들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이들의 보건문제는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노동사무소와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련업 무실시기관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조직화된 노력으로 팀웍을 발휘하여 역할분담을 잘함으로써 50인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 증진시키는 일은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구미시민 전체의 건강증진 도모라는 보건소의 기존 사업목표나 역할과도 일치하는 일이다.

4. 향후 5개년 계획

1) 1999년도

가. 협의회 구성 : 보건소와 지역내 산업보건관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일반건강진단 및 성인병 검진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공단 구미지도원, 중소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하여 역할 분담.

나. 구미시 전체 영세사업장 기초조사 : 노동부에 협조공문 발송 및 교류를 통해 사업장수, 소재지, 고용인원수, 검진기관명과 추구관리정도, 보건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질환자수 등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보건관리 수준을 파악.

다. 시범사업장 선정 :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지 않는 300인 이하 사업장 중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 협조가 잘되는 1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수행.

라. 산업보건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는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결핵관리 및 예방접종, 집단식중독 예방 등 전염병관리, 방역사업, 보건교육 등을 역할분담하여 수행함.

2) 2000년도

가. 1999년 사업평가 및 사업장 변동사항 파악 : 소재지 변경, 상호명 변경, 보건담당자, 도산 여부, 새로 설립된 업체조사

나. 시범사업장 확대 : 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3) 2001년도

가. 2000년 사업평가 및 사업장 변동 여부 파악

나. 관리사업장 설정 :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발돋움, 사업장 100개 이상 관리

4) 2002년도

가. 2001년 사업평가 및 사업장 변동 여부 파악

나. 지역내 산업보건 연구소와 사업협조 및 학술교류를 통한 보건관리 수준 향상

다.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사업장 확대

5) 2003년도

가.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 요청 유도

나. 지난 4년간의 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 모델 제시

5. 사업내용

1)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지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작업관리 및 직업병 & 산재관리 -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기관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공단지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 성인병·관리

가. 의료보험공단이나 검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혈압, 당뇨병, 간장질환자들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추서관리

나. 기존의 진료체계와 연계하여 필요시 방문진료 실시

다. 필요성 :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성인병질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성인병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중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더우기 영세사업장 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고령근로자들이 많고 질병유병율이 더 높은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게 유도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전염병 관리

가. 독감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 식중독 및 기타 급.만성 전염병관리

나. 기존의 방역계 및 방문보건계, 예방접종실과 사업업무 분담

다. 사업장과 연계 방문하여 사업추진

5) 방역사업

가. 방역이 미비하거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시

나. 기존의 방역계와 연계하여 업무 분담

6)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업

: 공단 지도원, 보건소, 산업보건기관 실무자가 정규회의를 통해 상호 협조하에 보건교육을 실시

7) 검진기관과 연계된 결핵관리사업

: 채용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성인병검진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핵유소견자 및 비활동성 폐결핵환자들의 보건소 등록 및 관리

- 구미시의 경우 성인병 검진, 일반검진, 특수검진을 받게 되는 연인원은 약 8만명으로 이때 발견된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 등록토록 한다면 결핵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검진기관에서의 소견서(판독소견 첨부) 및 흉부사진을 복사하여 우송 추후관리

- 보건소에서 발견된 결핵 유소견자들을 검진기관으로 판독 의뢰하여 추후관리

8) 위생관리 : 보건소가 식당위생관리, 급수 등에 대한 위생 점검, 지도

9) 재활사업

: 산재로 인한 장애근로자들에 대한 재활사업 실시(5개년 사업 종합 평가 후 고려)

국고지원대상 근로자 99년도 “암” 검진사업 계획(구미시 보건소와 연계)

구 분		검 사 방 법	실 시 기 간	검 진 기 관	비 고
위 암		위장간접조영촬영	99. 4. 19-5. 1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40세이상 암위험군 우선
자 궁 암		세포진직접채취법	99. 4. 12-416	가족계획협회 경북지부	
유 방 암		유방단순촬영		가족계획협회 경북지부	
간 암	간기능검사 (1차)	SGOT/SGPT, HBsAg	99. 3. 22-4. 1	구미시보건소 or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간기능검사결과 유소견자 우선
	간초음파 (2차)	복부초음파검사	99. 4. 22-27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골 다 공 증		골밀도감사	99. 7. 12-16	가족계획협회 경북지부	45-64세 여성
위장질환원인균		혈청검사 (혈중IgG검사)	99. 4. 19-5. 1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30세이상 위장증상 호소자